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금채불회사의 합병·신주발행 제한 등〉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11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지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7.
3. 회 부 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24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상회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법령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국가가 먼저 대위변제를 하고 체불기업에 구상청구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체불임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면서도 오히려 계열사 합병, 주식 매수,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 확장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자산 매각을 통해 임금 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대지급한 임금에 대한 변제조차 외면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 사업 확장 행위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자 함(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대해 합병을 제한함(안 제174조제1항 단서).

나.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74조제1항 단서에 위반한 합병 회사의 합병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준용함(안 제236조제2항, 제530조제2항, 제603조).

다. 임금체불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규상장을 제한함(안 제416조의2 신설).

라.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 신주발행 또는 신규상장을 한 경우 책임자를 처벌함(안 제624조의3).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체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에 대해 합병·신주발행 및 신규상장 등과 같은 회사법상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사는 재직·퇴직근로자에게 임금등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체불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그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체불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된 경우 합병을 할 수 없고(안 제174조제1항 단서 및 각 호 신설), 재직·퇴직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대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236조제2항 신설).

○ 주식회사가 재직·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등의 체불이 일정 기간 계속되고 체불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주의 발행²⁾ 및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³⁾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416조의2 신설)

-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여 합병, 신주발행 및 신규상장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6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第174條(會社の 合併) ① 會社は合併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설>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 ----- .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

2)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3) 「상법」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생략)

「상법 시행령」 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5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③ (생략) 第236條(合併無效의 訴의 提起) ① (생략) <u><신설></u> ② 前項의 訴는 第233條의 登記가 있는 날로부터 6月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u><신설></u>	<u>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경우.</u> <u>다만, 체불임금의 준부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한다.</u> 2. 제1호에 따른 체불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자는 제174조제1항 단서를 청구의 기초로 하는 경우에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 -----. 제416조의2(임금채불회사의 신주 발행 제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174조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미상장회사에 한한다.

현행	개정안
제530條(準用規定) ① (생략) ② 第234條, 第235條, 第237條 내지 第240條, 第329條의2, 第374條第2項,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第439條第3項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合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④ (생략) 第603條(準用規定) 第232條, 第234條, 第235條, 第237條 乃至 第240條, 第443條, 第522條第1項·第2項, 第522條의2, 第523條, 第524條, 第526條第1項·第2項, 第52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29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合併의 境遇에 準用한다. <신설>	1. 신주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 상장 제530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6조 제2항, 제237조-----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3조(준용규정) ----- -----제236조제2항, 제237조----- ----- ----- ----- -----. 제624조의3(임금채불회사의 합병 등 제한 위반의 죄) 제174조제1항 단서 또는 제416조의2를

현행	개정안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구체적 검토

- 임금을 일정기간·일정액수 이상 체불한 회사의 합병·신주발행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긍정적인.
- 다만, 회사법은 사원과 회사의 권리·의무, 회사의 의사결정,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 등과 같이 단체의 내부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법적 규율, 회사와 제3자(다른 회사 등) 간의 거래에 관한 규정, 회사와 회사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 주식의 양도에 관한 규정과 같은 거래법적 규율 등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법령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임금체불회사에 대한 불이익한 규율을 이 법에 두는 것에 관한 체계적 정합성 및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⁴⁾

4) 예를 들어, 상습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4)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과 같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임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 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 또한,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제235조⁵⁾),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회사의 임금지급채무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5

-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5)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